

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0. 7. 13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6월 24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26일

다. 상정일자 : 제40회 이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

제1차(2000. 7. 11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이한대)

가. 제안이유

- 정부 부처에 여성부가 별도로 신설될 예정이고 경기도에서도 경기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등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임.
-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두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·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(안 제2조).
-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특정분야 안건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- 위원회는 여성정책관련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·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,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8조).
-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청취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또한 공청회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윤순성)

- 여성발전기본법 개정('99. 2. 8 일부개정)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
- 남녀평등을 촉진하고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7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
김정호 위원장외 4인 제출

나. 수정이유

○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입안된 동조례의 모순점이 여러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그 미비점을 일부 보완·개선하고자 함.

다. 수정주요골자

- 광의적인 제명을 포함한 입안목적에 불부합한 조문 내용을 보완함(제명, 안제1조).
-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포괄적인 구성범위를 합축함(안제3조, 제5조).

7. 심사결과 : 일부 수정의결(만장일치)

8. 기타사항 : 없 음

- ※ 첨부 : 1.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로 한다.

안제1조 중 “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”를 “이천시정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”로 한다.

안제3조제2항 중 “시장”을 “부시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제2호 중 “여성단체”를 “여성단체장”으로 한다.

안제5조 중 “시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u>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</u>	<u>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</u>
제1조(목적) <u>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</u> <u>이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</u>	제1조(원상복구) <u>이천시장을 자문하기 위하여</u> <u>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</u>
제3조(구성) ① (생략) ② <u>시장</u> ③ 1. 2. <u>여성단체</u> ④(생략)	제3조(구성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<u>부시장</u> ③ 1. 2. <u>여성단체장</u> ④(제정안과 같음)
제5조(위원의 해촉) <u>시장</u> 1. ~ 4. (생략)	제5조(위원의 해촉) <u>위원장</u> 1. ~ 4. (제정안과 같음)